

(시·군·구공무원용)

2회이상 위반기록란		교통법칙행위 적발고지서					
회 경찰서(제주특별자치도) No.		No. (연도)					
아래와 같이 전용차로통행,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및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서장(제주특별자치도지사)에게 출석할 것을 고지하오니 정해진 일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출두	기 일	년 월 일 시 분까지					
	장 소	경찰서(민원봉사실)[자치경찰대]					
위반 행위 요지	위반일시	년 월 일 시 분경				보관	☐ 운전면허증 ☐ 국제운전면허증 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검인 ☐ 기타
	위반장소						
	적용법조	☐ 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 (전용차로통행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29조 (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(주정차금지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3조 (주차금지장소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4조 (주정차방법위반)					
위반자	성 명				생년월일		
	주 소						
	차 량	☐ 관 ☐ 영 ☐ 건설기계 시 제 호 ☐ 자 ☐ 외 ☐ 노면전차 도				차종	
	운전면허	[]대형 []보통 []소형 제 종 []건설기계 []특수 []원자 []국제 []노면전차				면허 번호	
	날 인	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인정합니다. (서명 또는 인)					
년 월 일 단속공무원 (인)							
위반사항	※ 위반내용(상세히)						